여순사건위원회 전문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
최종 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안내

여수·순천10·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공고 제2026-22('26.9.18.)호, 2026-23('26.10.14.)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10월 30일

여수·순천10·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

1 최종 합격자

채용분야	임용예정직급	응시번호(성명)
여순사건 희생자 조사·심사	전문임기제 나급	**나-05(이○민)**

2 채용후보자 등록 안내

- (등록대상) 최종 합격자
- (등록기간) 2026. 11. 2.(월)~2026. 11. 4.(수) 09:00~17:00 **※ 점심시간 제외**
- (등록장소) 여순사건위원회 사무실(서울 중구 서소문로 120, ENA센터 8층)
- (등록방법) 직접 방문 등록
- (등록내용)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작성 및 서류 제출 등

3 제출서류 * 모든 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전부가 공개되도록 발급

□ 온라인 제출(경찰청 신원조사 포털에서 직접 등록, 안내메시지 발송 예정)

① 신원진술서 1부

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(정식) 1부

③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

④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(신원조사) 1부

⑤ 기본증명서(상세) 1부

⑥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1부

⑦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1부 **※ 해당자만 제출**

⑧ 입양관계증명서(상세) 1부 **※ 해당자만 제출**

⑨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(상세) 1부 **※ 해당자만 제출**

⑩ 사실혼 배우자 기본증명서(상세) 1부 **※ 해당자만 제출**

⑪ 친자관계 없는 배우자의 직계비속 기본증명서(상세) 1부 **※ 해당자만 제출**

⑫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1부

※ 신원조사업무포털 서류 작성·제출 방법은 시스템 내 "신원조사 서류(정식)제출 사용 설명서"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□ 방문 제출

①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(결격사유 등 조회) 1부 [서식 1]

② 결격사유 등 확인을 위한 자기진단 체크리스트 1부 [서식 2]

③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 1부 [서식 3] *** 사진 부착, 마약류 검사 포함**

※ 전문의 소견서[서식 3-1]는 신체검사 결과가 판정보류인 경우만 재검사를 통해 제출

④ 기본증명서(상세) 1부 *** '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'에서 발급 가능**

⑤ 주민등록초본 1부 *** '정부24'에서 발급 가능**

※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

⑥ 사진 2장 ***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증명사진(3.5 x 4.5)**

4 유의사항

- 정해진 기한 내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, 임용할 의사가 없는 경우 임용포기서[서식 4]를 작성하여 등록기간 마감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※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합격취소, 임용결격사유,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.

-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이어야 하며, 기본증명서, 주민등록초본 등 증명서류는 주민등록번호 전부가 공개된 최근 3개월 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.
- 신원조사 관련 제출 서류는 개별 안내한 기한 내에 경찰청 신원조사업무포털(http://bgi.police.go.kr)에서 직접 온라인 작성·등록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채용후보자 등록, 신원조회(조사) 등을 거쳐 최종 임용될 예정입니다.

 ※ 결격사유·신원조회(조사)·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시에는 임용되지 않을 수 있음
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순사건위원회 기획총괄과(☎02-2076-531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[서식 1] ■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[별지 제8호서식]

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대상자(법정대리인)가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
이용기관 명칭	여수 · 순천10 · 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
이용사무(이용목적)	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관련
공동이용 행정정보 보유·이용 기간 (주기적으로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조회 기간 · 주기 명시)	2026. 11. 1. ~ 2026. 12. 31.
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	성명, 주민등록번호, 전화번호, 고유식별번호
공동이용 행정정보(첨부서류)	결격사유 유무 범죄경력 유무 공무원시험 부정행위 여부

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(첨부서류)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,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해당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「전자정부법 시행령」 제90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.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.

(필요시 기재) [] 주민등록번호() []여권번호()

[]운전면허의 면허번호() []외국인등록번호()

년 월 일

대상자(본인) 성 명: (서명 또는 인)

생년월일:

전화번호:

※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(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.)

법정대리인 성 명: (서명 또는 인)

전화번호:

여수 · 순천10 · 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귀하

[서식 2]

결격사유 등 확인을 위한 자기진단 체크리스트

※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, 임용되더라도 그 임용은 당연무효임

목 록	해당여부
① 피성년후견인	□ 해당 □ 해당없음
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	□ 해당 □ 해당없음
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□ 해당 □ 해당없음
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□ 해당 □ 해당없음
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	□ 해당 □ 해당없음
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*「공직선거법」 제266조, 「정치자금법」 제57조, 「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7조, 「병역법」 제76조	□ 해당 □ 해당없음
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□ 해당 □ 해당없음
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라.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죄	□ 해당 □ 해당없음

목 록	해당여부
⑨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,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,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	□ 해당 □ 해당없음
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□ 해당 □ 해당없음
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□ 해당 □ 해당없음

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26. . .

성명 : (서명)

여수·순천10·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귀하

[서식 3] ■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[별지 제7호 서식]

(앞쪽)

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

※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① 구 분	② 시험실시 기관	③ 응시직명	④ 응시번호	⑤ 성 명		사 진 (3.5㎝ × 4.5㎝) ※ 압인 또는 계인
⑥ 검사 시						
⑦ 재 사 용				⑧ 주민등록번호		

검 사 내 용

키		cm	체 중		kg
허리둘레		cm	혈 압		
(교정)시력	좌: () 우: ()	색 신 (색 각)		(교정)청력	좌: () 우: ()

종 양 질 환		이 비 인 후 질 환	
호 흡 기 질 환		심 혈 관 질 환	
소 화 기 질 환 (간 질 환 포함)		신장/비뇨기계질환	
내 분 비 질 환		혈 액 질 환	
신 경 질 환		피 부 질 환	
근 골 격 계 질 환		안 질 환	
정 신 질 환		흉 부 X선 검 사	
기 타			

마약류 검사

필로폰		대마		케타민		엑스터시		코카인		아편	

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.

년 월 일

검사자(담당의사) (서명 또는 인)

검사 결과 합격 여부	[]합 격 []판 정 보 류	합격 사유	
판정보류 사유 (질환명 및 재신체검사 필요 사유 등)	*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		

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검진기관의 장 (서명 또는 인)

유효기간	판정일부터 1년(마약류 검사는 판정일부터 4개월)

유의사항 및 작성방법

[응시자]

1.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.
 가.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.
 (예: 인사혁신처, 국세청 등)
 나.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.
 (예: 9급 세무직, 7급 전기직 등)
 다.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.

2.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[주민등록증(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), 운전면허증, 여권 등]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.

 ※ 응시자는 본인 질환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[검진기관]

1.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(押印: 도장을 눌러 찍음) 또는 계인(걸침도장)을 해야 합니다.
2. "검사 내용"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.
 가. 검사 결과 기재의 예: 질병명(심부전증, 백혈병, 척수종양 등)을 적거나 "정상", "양호", "이상 없음"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.

 ※ 필수사항: 질병이 있는 경우 "합격" 또는 "판정보류"와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합니다.

 ※ 검진기관에서는 필요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문진표를 채용 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.
 나. 임산부나 흉부X선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흉부X선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면제 사유를 흉부X선 검사 항목에 적습니다.
 - (작성 예시) 임산부인 경우 "임신으로 인해 흉부X선 검사 면제"라고 적습니다.
 다. 규정된 마약류 항목을 모두 검사하여 그 결과를 "양성" 또는 "음성"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.

3. "검사 결과 합격 여부"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[]안에 "√"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.

 ※ 응시자가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 판정에 참고합니다.

 가. 합격 사유 기재의 예

 - "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"에 해당하지 않음
 - 0000 질환에 해당하나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
 (예시: "만성골수성백혈병"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(官解)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)

 나.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
 - 0000 질환에 대해서는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000000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필요 (예시: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로 팔다리가 쇠약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신경과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가 필요함)

 ※ 응시자의 질환이 "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"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곤란한 상황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판정보류로 기재합니다.

4. 검사 내용 중 "마약류 검사" 항목만 제외하거나, 해당 항목만 검사하여 판정한 신체검사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.

5.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에 따라야 합니다.

[서식 3-1] ■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[별지 제8호 서식]

전문의 소견서

※ 하단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① 시험실시기관		③ 성 명		사 진 (3.5㎝ × 4.5㎝) ※ 압인 또는 계인
② 응시직명		④ 주민등록번호	-	

응시자의 질환명	
응시자의 질환과 업무수행 지장 여부에 대한 의견	※ 필요한 경우 양식을 변경하거나, 다른 소견서 양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응시자의 질환과 업무수행 지장 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_____전문의 (서명 또는 인)

※ 소속 의료기관명: (전화번호:)

유의사항 및 작성방법

[응시자]

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.

- ①란에는 시험실시기관(예: 인사혁신처, 국세청 등), ②란에는 응시한 직명(예: 9급 세무직, 7급 전기직 등)을 적어야 합니다.

[전문의]

1.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(押印) 또는 계인(契印)을 해야 합니다.
2. 위 소견서는 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서 응시자의 질환이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.

- 응시자의 질환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작성합니다.

[서식 4]

임 용 포 기 서

▪ 시험구분 : 여수·순천10·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전문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

▪ 응시번호 :

▪ 성 명 : ▪ 주민등록번호 : -

▪ 주 소 :

(우편번호 -)

▪ 연 락 처 : 일반전화 - - 휴대전화 - -

위 본인은 () 사정으로 인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으므로 임용을 포기하고자 합니다.

일자 : 년 월 일

성명 : (서명/인)

여수·순천10·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귀하

※ 괄호안 **포기사유** 예시 : 타 시험 합격, 현 직장업무 계속, 사업, 질병, 가사형편 등

※ 성명 옆에는 반드시 **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**을 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맨 아랫줄은 수신기관 표시

※ 주소·전화번호는 주민등록상의 주소 또는 응시원서상의 것과 달라도 되며, 현재 우편물을 받거나 연락받을 수 있는 곳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